

행 정 자 치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누락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원주시, 삼척시,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
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

내 용

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 제11조에 따르면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하는 때에는 검인된 계약서·등기필통지서 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 등 등기신청해태사실의 여부를 조사·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 원주시 등 12개 시·군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일명 RTMS이라 함, Real-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)⁵⁰⁾상의 등기해태과태료 대상관리목록을 부동산 등기 신청일 기준으로 2012. 10. 1.부터 2016. 8. 31.까지 감사대상기관에서 확인한 결과, 원주시 등 11개 시·군에서 [표]와 같이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의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.

50)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부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구축·운영

[표]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누락 현황

(단위 : 건, 천원)

구 분	과태료		구 분	과태료	
	누락건수	금 액		누락건수	금액
11개 구·군	415	95,974	철원군	6	1,077
원주시	74	49,881	화천군	7	364
삼척시	2	133	양구군	12	1,846
횡성군	18	5,374	인제군	176	16,284
영월군	35	1,360	고성군	51	3,859
평창군	14	12,267	양양군	20	3,530

※ 자료 :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원주시장, 삼척시장, 횡성군수, 영월군수, 평창군수, 철원군수, 화천군수, 양구군수, 인제군수, 고성군수, 양양군수는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의 등기해태과태료 대상관리목록을 기초로 검인된 계약서·등기필통지서 등 관계서류를 조사하여 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누락 분을 부과·징수하시기 바랍니다.